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2017.4.24.)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3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7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13
8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5
9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18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17. 4. 3.

나. 발 의 자: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종두, 박희순, 변상원, 권재경, 이성복, 이홍희)

다. 회부일자: 2017. 4. 7.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개정이유

-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하여 각종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안 제6조)

- 당초: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변경: 출산장려금 및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은 출생일 및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나.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변경함(안 제9조)

- 당초: 거창군
- 변경: 피보험자(출생아)의 부모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운영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출산장려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1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두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부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자격기준을 완화한 수혜범위 확대와 경제적 지원 확대로 출산장려 효과를 창출하고 또한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17. 4. 3.
- 나. 발 의 자: 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박희순, 표주숙, 이성복, 강철우, 김향란)
- 다. 회부일자: 2017. 4. 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제정이유

-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 사업 규정(안 제4조)
- 라. 사업비 지원 규정(안 제6조)
- 마. 지원 신청 규정(안 제7조)
- 바. 지원 결정 규정(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 나.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개정이유

- 거창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개의 법정리로 이루어진 일부 부지에 대하여 구역 내 도로경계면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지역특성 및 역사적 전통,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정리의 구역을 변경함(안 별표1)
 -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27필지 중 16,405m²)
- 나.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변경함(안 별표2)
 - 지내 ⇒ 갈지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읍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김천리 중 일부를 송정리로 변경하고, 거창읍 가지리의 행정리 명칭을 ‘지내’에서 ‘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역 여건변화에 따라 리의 구역을 실정에 맞게 정리하고,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행정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7.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개정이유

- “거창승강기산업밸리”보다 더 포괄적 의미인 “거창승강기밸리”로 용어를 변경하여 대내외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지원취소 및 환수기간을 관련법령 개정내용과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괄적 의미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명, 제1조, 제2조제1호)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 거창승강기밸리

나. 승강기산업체에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 기간 완화(안 제15조제4항)

- (현행) 7년 ⇒ (변경) 5년

다.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 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제6호·제7호)

- (현행) 7년 ⇒ (변경) 5년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승강기산업밸리’를 ‘거창승강기밸리’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과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용어변경을 통해 거창승강기밸리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2조의 개정내용에 일치시켜 완화됨으로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개정에 따라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규정 일부 삭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삭제사항 반영(안 별표)

- 삭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회복 신청, 폐천부지 교환 신청, 수산물가공업신고

나. 수수료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 (현행)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추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에 한함)
⇒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무료화 등의 사유로 수수료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16.12.30.)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개정이유

-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공유재산의 분할납부의 범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 반영
 -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납부 규정 신설(안 제28조제2항)
 -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30조제7항)
- ※ 법령위임조례(규제완화) 정비과제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개정조례안은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8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분할납부와 사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개정(2016.7.12)으로 조례에서 행자부 고시로 변경된 조항을 삭제하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제안이유

-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사항 해결,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추구하고자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 칭 :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 나. 구 성 :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현재 74개 郡 참여)
- 다. 주요기능
 - 1) 농어촌농어업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와 정책 등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관계기관 등에 제기하는 건의, 대책요구, 기타 대응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지역의 공통 행정수요 파악 및 충족방안에 관한 사항
 - 3) 농어촌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 4)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한 연구, 시책 수립, 연계 협력, 공동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

- 라. 협의회조직 : 회장 1명, 부회장 3명, 사무총장 1명, 감사 2명
- 마. 실무협의회 : 안건별 실무부서장으로 구성, 사전검토와 조율 수행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규약은 전국 군(郡)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2017. 4. 7.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제안이유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및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휠체어택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 업 명: 거창군 휠체어택시 사업 민간위탁
- 나. 사 업 량: 휠체어택시 차량 2대
- 다. 위탁대상 사무
 - 휠체어택시 위탁운영(2대)
 - 그 외 위탁차량 관리 및 차량 운행 서비스 사무 관리
- 라. 그간 운영상황
 - 수탁기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
 - 위탁기간: 2014. 5. 16. ~ 2017. 5. 15.(3년간)

○ 위탁차량

차종	규격	차량번호	승차인원	연식	비고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4우8590	7명	2011년	* 휠체어리프트 장착
중형승합	그랜드 스타렉스	79서1654	7명	2007년	

○ 최근 3년간 차량 이용현황

- 2014년도: 1,256명(1일 평균 운행횟수 2.5)
- 2015년도: 1,632명(1일 평균 운행횟수 3.3)
- 2016년도: 2,100명(1일 평균 운행횟수 4.0)

마. 운영계획

○ 재위탁 운영

- 수탁기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창군지회(지회장 백승모)
- 위탁기간: 2017년 5월 16일 ~ 2018년 6월 30일까지
- 위탁내용: 휠체어택시 운영, 차량관리 및 운행서비스 사무관리 등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동의안은 휠체어택시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5.15.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기간이 경과하여 2017.4.6.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 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재위탁에 적격한 것으로 심의되었고

라. 현재 수탁기관은 노인·장애인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년간 휠체어택시 사업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 계속 위탁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위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4. 5,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2017. 4. 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2017. 4. 17.

2. 제안이유

-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량을 결집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회칙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1) 목 적: 가야문화권 시·군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간 동반자적 공동발전을 모색

나. 기능(안 제2조)

- 1)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에 관한 사항
- 2) 가야문화권의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3) 회원 지자체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 4)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 5)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

- 6) 기 능: 관광마케팅 공동전략 수립, 관광상품 개발, 관광설명회 개최 등

다. 구성 및 조직(안 제3조 ~ 제7조)

- 1) 거창군·고성군·고령군·구례군·광양시·남원시·달성군·산청군·성주군·순천시·의령군·장수군·창녕군·하동군·함안군·함양군·합천군을 포함한 가야문화권 지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함
- 2) 협의회 의장은 1명으로 하고 사무국은 의장 시·군에 둠
- 3) 의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음

4.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가. 이 규약안은 가야문화권 시군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역량을 집결하고 동반자적 공동발전 하고자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 나.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협의회로, 같은 법 제153조 및 제154조의 협의회 조직 및 규약 등이 체계상 문제점이나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과제 해결과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해당없음

7.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유지: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